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20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한정애·조 국·이수진

박해철 • 이기헌 • 서영교

김준형 • 박희승 • 정성호

박지원 · 장철민 · 송옥주

김영배 · 김주영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 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

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비용의 일부를"을 "비용 중 100분의 14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과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급여액은 육아휴 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 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 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 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회계 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년 보험사업에 드는 <u>비용의 일</u>	<u>비용 중 1</u>
<u>부를</u>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00분의 14 이상을 일반회계에
한다.	서 부담하되, 제75조에 따른 출
	산전후휴가 급여등과 제77조의
	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
	급여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는 그 전부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③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④ <u>ਜ</u>
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액은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
	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
	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
	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신 설></u>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
인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6
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육
아휴직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u>⑤</u> (생 략)